

문서번호	교육정책과-6667
결재일자	2017. 11. 1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학교안전지원팀장	교육정책과장	평생교육국장

나와 당신이 이어지며, 함께 공존하는 서울

I · SEŌUL · U

2018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

2017.11.

평생교육국
(교육정책과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자 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 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배 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선 거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안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 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 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2018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

학교보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2018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」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학생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

I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□ 사업근거
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20조의5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8항
- 「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(조례 제6571호, '17. 7.13)

□ 추진경위

- 2011년 :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운영(시 ⇒ 운영업체 ⇒ 학교)
 - '1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탁 수수료(약 20억원) 절감 요구
- 2012년 : 학교 직영 전환운영(시 ⇒ 학교)
- 2013년 : 50개교 학교보안관 1명씩 추가배치
- 2013년 :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실시(재계약시 반영)
 - (재)국민체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('13.11.15)하여 연 1회 체력측정
- 2013년 :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은행 운영(서울시시우회 협약)
- 2015년 : 10개교 학교보안관 1명씩 추가배치
- 2016년 :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방안 수립·시행
 - 고령화 문제 개선 위해 근무연령 기준(만55세~70세) 신설, 기존 근무자 유예기간 설정
 - ▶ 체력측정 결과를 직무평가에 반영(20점), 신규자 체력측정(국민체력 100) 실시
- 2017년 : 6개교 학교보안관 1명씩 추가배치
- 2017년 :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·시행 및 조례 제정
 - TF 운영을 통해 학교보안관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안 및 조례안 마련

※ 2017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개선내용

구분	현행	개선
<p>1. 학교보안관 채용/해고</p>	<p>① 근로계약 만료시 당연퇴직 관련 규정 사항 없음</p>	<p>① 최대 5년 근무 후 당연 퇴직(조례 반영) (1년 단위 근로계약, 5년 경과 후 산기 채용 절차에 따름)</p>
	<p>② 채용심사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체검사서 확인 - 국민체력 100 2등급 이상(권고) 	<p>② 채용심사 기준 개선</p> <p>신체검사서 확인 기준 설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교정)시력 양안 각각 0.8 이상 - (교정)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 <p>국민체력 100 인증서 확인 기준 재설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체력 100 3등급 이상(의무)
	<p>③ 면접 평가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접시험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명시적 기준 없음 - 면접시 지역가점 5점(의무), 여성가점 5점(권고) 적용 	<p>③ 면접 평가 기준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접시험 평가위원 총 5명으로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(3명), 운영위원(1명), 안전 전문가(1명) - 최대 8점 가점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(5점) 및 여성(5점) 중 택 1 · 안전·보안 관련 자격 보유(3점) (일반경비지도사, 응급구조사, 경비·경호자격증, 학교안전지도사 중 택 1)
	<p>④ 채용공고 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시적 규정 없음 	<p>④ 채용공고 기간 조례상 명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보안관 채용공고 기간 설정(5일 이상)
	<p>⑤ 근로계약해지 대상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시적 규정 사항 없음 	<p>⑤ 해고 대상 규정 조례상 명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범죄·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-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자 -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-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자 - 5일 이상 무단 결근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자 등

※ 2017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개선내용

구분	현행	개선
2. 학교보안관 운영	<p>① 체력측정 종목·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만도 등 총 7개 종목 - 20점 이상 획득시 합격 (35점 만점) 	<p>① 체력측정 종목·기준 등 보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7개 종목 유지/당락 종목 신설 · 합격기준 (교정)사력 양안 각각 0.8 이상 · (교정)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 ※ '17년 시범 운영 후 '18년부터 적용 - 단계적 합격기준 상향 조정 · '18년(23점), '19년(26점), '20년(29점) 이상 합격
	<p>② 직무교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 1회 집합교육 실시 - '안전·보안' 교육 중심 	<p>② 직무교육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 1회 집합교육 실시(필요시 추가 1회) - 안전교육 + 학생소통능력 강화 교육
	<p>③ 직무평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자 : 학교장, 복무담당 - 만족도 조사 사전 미이행 	<p>③ 직무평가 방법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자 : 학교장, 복무담당, 학부모(1명) ※ (학교보안관 등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) 학부모 -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⇒ 평가시 활용
	<p>④ 학교보안관 근무지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무지침 내 업무범위 ·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8가지 항목 - 근무지침 내 시간대별·상황별 근무수칙 부존재 	<p>④ 학교보안관 업무 매뉴얼 제작·활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8가지 항목 외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교통안전 지도 추가 - 업무 매뉴얼 내 시간대별·상황별 근무수칙 규정
	<p>⑤ 우수 학교보안관 포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근거하여 포상 	<p>⑤ 우수 학교보안관 포상 규정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 내 우수 학교보안관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

II 사 업 개 요

- 배치인원** : 총 1,187명(서울시 국·공립초 562개교) ※ '11.3월부터 운영
 - 학교당 2~3명 : 499개교 2명, 안전취약 63개교 3명
 - 녹원초 신설, 개포초 휴교 예정(학교보안관 운영 학교 증감 내역 없음, '17년 562개교)
 - ▶ 신화초 추가배치 사유 소멸에 따른 안전취약 학교 63개교로 축소('17년 64개교)
- 주요활동** :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역할 부여
 -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CCTV 상시 모니터링
 - 등·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, 취약시간·취약지역 교내·외 순찰 등
- 근무시간** : 주 40시간(평일, 토요일)
 - 평 일(1일 2교대) : 7:30~16:00(오전), 12:30~21:00(오후)
 - 토요일(1인 근무) : 8:00~13:30
 - 평일 휴게 1시간·토요일 휴게 30분으로 하되,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
 - ▶ 학교장은 학교사정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(2주 평균 40시간 준수)

〈 ※ 근로기준법(휴게시간 부여) 〉

제54조(휴게)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

②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
 - 근무시간 자율 선택제 운영
 - 기존 예산 범위(2인 기준 주당 80시간) 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보안관 근무시간 선택하여 최대 3인까지 채용 가능
 - ▶ 단, 기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, 학교보안관의 서면동의서 징구
- 월급여** : 1,646,770원('17년도 대비 15.54% 증가)
 - 월 급여 = 기본급 1,573,770원 + 급식비 73,000원
- 운영방법** : 학교장 직영(학교장 직접채용 1년 기간제 근로자)
- 소요예산** : 28,553백만원(교육기관에 대한 보조)

III 추진실적

《 2017년 주요실적 》

- ◆ 배치인원 : 서울시 국·공립초 562개교 1,188명
 - 학교당 2~3명 : 498개교 2명, 안전취약 64개교 3명 배치
- ◆ 학교보안관 활성화 TF 운영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·시행(5월)
 - 시민대표(시의회), 학부모, 교육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TF 구성
 - 총 6회 TF 운영(2~5월) ➡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·시행
- ◆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(7월)
 - TF 1~6차 회의에서 도출된 고령화 등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 조례상 반영
 - 자격강화, 채용기간 제한,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, 해고 및 포상 규정 마련

〈 조례 주요내용 〉

- 채용기간 5년으로 제한(제10조)
 - '18년 신규 채용자부터 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, 만료시 신규채용 절차에 따름
-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(제11조, 부칙)
 - 채용 가능 연령을 만55세~70세로 하되, '16.7월까지 채용된 자는 유예기간 적용
- 해고 규정 신설(제12조)
 - 직무평가 결과 근무 부적합자,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해고 가능

- ◆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(8월)
 - 총 1,078명 참여(참석률 90.7%), 우수 학교보안관 22명 시장포창 수여
 - 소통 및 안전 분야 전문가 특강 실시(소통 마인드 함양, 학교 내 사고 예방)

- ◆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(9월)
 - (성)범죄 경력자 등 무자격자 채용은 없었으며, 근무(휴게)시간 등도 적정 준수 중

구분 연도	(성)범죄 경력조회	결격사유 조회	친절도	근무시간 준수	휴게시간 준수
2017년	100.0%(0.5% ↑)	100.0%(4.3% ↑)	99.8%(0.2% ↑)	100.0%(0.2% ↑)	100.0%(0.5% ↑)
2016년	99.5%	95.7%	99.6%	99.8%	99.5%

IV 추진 계획

추진 방향

- ❖ ‘학생보호인력’으로서 역할 강화(보안 중심)를 통한 운영 내실화
- ❖ 고령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및 운영 개선방안 본격 추진
 - 근무상한연령 유예기간 적용(46년생까지 연말 퇴직) 및 신규자 최대 근로 가능기간 설정
- ❖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강화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도모

추진체계

국·공립 초등학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채용 및 근무여건 조성 · 자체 직무교육 수립시행 · 복무 및 급여 관리 · 운영지원금 정산 보고 	서울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획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· 직무교육(집합) 실시 · 운영지원금 교부 및 정산 · 근무실태 모니터링 등 	학교보안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인 출입통제 · 취약지역 순찰 확행 · 학생 등·하교지도 ·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
시교육청, 시우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업무관련 협조(시교육청) · 대체인력 지원(시우회) 		

추진내용

①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추진

- **시력·청력** 학교보안관 채용시 신체검사서 확인 기준 설정(제7조)
 - (교정)시력 양안 각각 **0.8 이상**, (교정)청력 좌우 각각 **40데시벨 이하**인 자로 채용(권고)
- **체력기준** 국민체력 100 인증 확인 기준 명시(제7조)
 - '17년 운영지침상 2등급 이상 채용(권고) ➔ '18년 **3등급 이상 채용(의무)**
- **채용기간** 신규채용시('18년~) **최대 근무기간(5년)** 설정(제10조)
 - '18년 신규채용 학교보안관은 최대 5년까지 근무하되, **채용기간 만료시 당연퇴직**토록 하고 퇴직자가 재고용(취업)을 원할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름(의무)

- **채용공고** 학교보안관 채용공고 기간 **5일 이상 의무화**(제10조)
 - 지원자 모두가 채용 기회를 공평히 부여받도록 적정 수준의 공고기간 설정
- **채용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** 채용 가능 연령을 **만55세~70세로 명시**(제11조)
 - 만 70세 도달 연도의 말까지 근무 가능, '16. 8월 이전에 채용된 사람은 아래 내용 참조하여 **근로 종료일자 적용**(부칙 제2조)

〈 기존 근로자 근무상한연령 적용 기준 〉

출생 연월일(범위)	근로 종료일자	비고
1944. 1. 1~1946.12.31	2018.12.31	'18년 기준 만 72세~74세
1947. 1. 1~1949.12.31	2019.12.31	'18년 기준 만 69세~71세

- **포 상** 우수 학교보안관에 대해 포상 규정 마련(제15조)
 - 동일 학교에서 만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직무평가 평균 90점 이상자 중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공적이 우수한 자로 추천

②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사항 추진

- **면접평가 기준 강화** 면접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 가점 기준 개선
 - 평가위원(5명) : 학교 내부(3명), 운영위원(1명), 경찰·소방관 등 안전 전문가(1명)
 - 평가가점 : 면접시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 가점(3점) 적용 및 가점 적용 상한 8점 규정
 - ▶ 지역민(5점) 및 여성(5점) 가점 중복시 1개 항목만 적용하며, 안전·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 3점의 가점 적용

【 자격증 인정범위 】

- ◆ 일반경비지도사, 응급구조사[타 사례(청원경찰) 가점 적용 준용]
- ◆ 경비·경호자격증, 학교안전지도사(강원도 학교보안관 가점 적용 준용)

- **체력측정 종목·기준 보완** 당락 종목 신설 및 합격기준 단계적 상향 조정
 - 기존 근무자 체력측정시 시력 및 청력에 대한 당락 기준 마련, 본격 시행
 - ▶ (교정)시력 양안 각각 0.8 이상, (교정)청력 좌우 각각 40dB 이하('17년 시범실시)

합격기준 : 20점('17년) ➡ 23점('18년) ➡ 26점('19년) ➡ 29점('20년)

③ 학교보안관 근무환경 등 처우 지속 개선

- '18년 최저임금 반영 월급여 약 15.5% 상승(1,425천원 ➡ 1,647천원)
 - 학교보안관 시급 : 6,470원('17년) ⇒ 7,530원('18년), 1,060원 상승
-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은행 운영 지속
 - 목 적 : 연가·경조사 사용 등 일시적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
 - 운영기간 : '18. 1월 ~ 12월(연중)
 - 운영방안 : 협약 체결 기관((사)서울특별시 시우회)에서 운영
 - 대체인력 : 만 67세 이하 신체 건강한 서울시 퇴직공무원

〈 배치 시기 및 사유 〉

구 분	대체인력 배치사유	비 고
연 중	◦ 경조사, 병가, 퇴직	
학기 중	◦ 연가, 공가(특별휴가)	여름·겨울방학 기간 제외 (단 봄방학은 가능)
기 타	◦ 근로자의 날(5.1)	

※ 지원불가 : 학교자율수업일, 학교보안관 직무교육일, 선거일, 체력측정일

④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강화로 직무능력 향상

○ 학교보안관 직무교육

구 분	집합 직무교육(시)	학교폭력예방교육(학교)
대 상	전체 학교보안관	소속 학교보안관
장 소	서울특별시청(변경 가능)	각 학교
시 기	'18. 8월중	연 2회 이상 참여(분기별 실시)
내 용	우수보안관 표창, 전문가 강의	학교폭력 등 직무 관련 학교자체 교육

○ 학교보안관 정기 모니터링

- 점검대상 : 전체 학교보안관 및 복무담당
- 점검요원 : 서울시 지정모니터요원(시우회 소속 퇴직 공무원)
- 내 용 : 근무(복무)실태 및 채용사항 등 현장 점검
- 점검시기 : '18. 9월 중
- 소요예산 : 총무과 지정모니터링 사업비(재배정)로 집행

○ 학교보안관 체력측정

- 측정대상 : '18년 근무자 중 '19년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 보안관
- 측정시기 : '18. 10월 중
- 종 목 : 7개 종목(종목당 5점, 총 35점 만점) / 시력·청력
 - ▶ 합격기준 : 체력측정 총점 23점 이상 및 (교정)시력 양안 각각 0.8 이상·(교정)청력 양귀 각각 40dB 이하
- 결과활용 : 직무평가 반영(20점) 및 기준 미달시 재계약 배제

〈 등급별 직무평가 반영 점수 〉

측정등급 (분 포 율)	1등급 (7%)	2등급 (24%)	3등급 (38%)	4등급 (24%)	5등급 (7%)	총점 23점 미만 /미측정
직무평가 반영점수	20점	17점	14점	11점	8점	0점 ※재계약 배제

○ 학교보안관 직무평가

- 평가방법 : 학교장이 해당 학교보안관에 대해 직무평가표에 의거 평가
- 평가내용 : 업무실적 파악 및 근무태도 평가
- 평가시기 : '18.11월 중
- 결과활용 : 평가점수 70점 미만자는 재계약시 배제(권고)

※ 직무평가 방법 개선사항

◆ 학부모 참여로 직무평가 객관성 강화

구 분	기 존	개 선
평가자 구성	▶ 학교장, 복무담당(2명)	▶ 학교관계자 2명, 학부모 1명(총 3명) ◦ 학교장, 복무담당, (학교보안관 등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)학부모

◆ 학교보안관 만족도 조사를 직무평가지 참고자료로 활용

-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15~30명의 학생에게 만족도 조사 실시
 - ▶ 학교보안관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·친절도·신뢰도·범죄 발생 가능성 등 조사
(운영지침 내 학교보안관 운영 설문조사서 참조)

V

사업예산

□ 사업비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8년	2017년	증감액	증감률(%)
교육기관에 대한 보조	28,553,007	24,310,876	4,242,131	17.44

□ 교부일정

- 교부방법 : 학교 공금계좌로 이체
- 집행방법 : 학교별 직접 집행

차수	운영기간(교부예정일)	교부내역
1차	1~2월분(1.19일)	인건비(*보험료, 퇴직금 포함), 유니폼비, 대체인력비, 명절휴가비, 교육여비
2차	3~4월분(3.16일)	인건비, 연차수당
3차	5~6월분(5.16일)	인건비, 휴일근무 수당
4차	7~9월분(7.13일)	인건비, 유니폼비(중도 교체자)
5차	10~12월분(10.12일)	인건비, 체력측정비
6차	추가 지원(12.14일)	'18년도 운영지원금 부족액

VI

추진일정

추진내용	2018년											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사업계획 수립	■											
운영지원금 교부	■		■		■		■			■		■
대체인력 교육 실시	■											
대체인력제 운영	■											
직무교육(집합) 실시								■				
만족도조사(시) 실시			■									
모니터링 실시									■			
체력측정 실시										■		
직무평가 실시											■	
만족도조사(학교) 실시										■		

